

메리츠화재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본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보험**은 보험사의 실적배당형보험,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구 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보험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자보호 미적용
원금손실	원리금 보장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	보험회사	계약자 부담

*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민원 · 분쟁 · 상담이 많은 사항

유형	중도해지 관련 유의사항
사례	A고객은 원리금보장형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타 금융 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였는데, 이전 시점에 사전 안내 받은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됨에 이의를 제기
설명	원리금보장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의 경우 사전에 공시되어 있는 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며, 만기 이전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 전에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의사항	예금자보호 대상 확인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DB제도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연락처

구 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 · 민원	전화상담 (1566-7711)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상담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분쟁조정	www.meritzfire.com (소비자보호광장 → 전자민원신청)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콜센터	국번없이 1372

■ 상품 설명

구 분	내 용
상품명	무배당 메리츠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제공기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상품특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액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으로 적립액을 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
적용이율 만기	1년, 2년, 3년, 4년, 5년 및 일단위 특정만기 중 선택가능
적용이율	부담금 납입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적용이율 산출기준	적용이율결정: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통안증권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이율보증형 보험의 이율보증기간(만기)가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 →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적용이율의 50%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적용이율의 50%) 적용
특별 중도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라 적립액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만기 재예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일에 직접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재예치됨.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재예치되며 재예치 시점의 적용이율 적용
수수료	당사와 협약서 참조

■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적용이율의 50%)이 적용됩니다.

■ 기타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예금자 보호여부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p> <p>*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p>
위법계약 해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메리츠화재 콜센터(1566-77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